

선원의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문제점 고찰

- 승선근무예비역을 중심으로 -

이지혜* · 이상일**

*, ** 한국해양대학교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for Seafarers

- Focused on Embarkation Work for Reserves -

Ji-Hye Lee* · Sang-Il Lee**

*, **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핵심용어 : 선원, 고용보험제도, 승선근무예비역, 병역특례제도, 병역법

Key Words : Seafarers, Employment Insurance System Embarkation Work for Reserves, Military Service, Military Service Law

세계 해상선원! 한국해양대입니다!!

선원의 고용보험에 관한 문제점 고찰

- 승선근무예비역을 중심으로 -



한국해양대학교
이지혜, 이상일

2017년도 해양환경안전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17. 4. 27

세계 해상선원! 한국해양대입니다!!

목 차

1	서론
2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3	고용보험제도
4	승선근무예비역제도와 고용보험제도상의 문제점
5	결론

제 2 장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세계 해상선원! 한국해양대입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의의

"승선근무예비역"이란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전사·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 근무하는 사람을 말함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의 요건

1)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는 면허를 취득한 자이어야 함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전사·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 근무하는 사람

제 4 장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와 고용보험제도상의 문제점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병역법에 따라 아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1항**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운업 분야의 경우 총톤수 500톤이상, 수산업 분야의 경우 총통수 100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박직원으로 3년간 승선근무를 해야함.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7항**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은 승선근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수 없음.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5항**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일수는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며, 휴가는 선원법 제70조제1항에 의거 1개월에 6일 또는 5일로함.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8제3항**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만료 처분의 대상인 사람은 복무기간이 만료된 날에 소집이 해제된 것으로 봄

* First Author : jihye@kmou.ac.kr

† Corresponding Author : silee@kmou.ac.kr, 051-410-5099